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8-100호

**오금동 143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6호(2014.09.11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, 송파구 주거재생과-1272(2015.1.29.)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된 오금동 143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7.1.28.까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-246호(2018.8.9.)로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서,
2. 같은 법 제22조[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(구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5항)]에 따라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16일

송 파 구 청 장

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내역

- 가. 명 칭: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추진위원장: 김희자)
- 나. 사업위치: 오금동 143번지 일대
- 다. 면 적: 14,180.0㎡
- 라. 소재지: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14길 3-16, B01호(오금동, 02-409-7697)
- 마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: 2015. 01. 29.

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: 2018. 08. 09.